

의안번호	제46호
의 결	2010년 월 일
연 월 일	(제 296 회)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0년 10월 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안

의 안 번 호	제46호
------------	------

제출연월일 : 2010년 10월 5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도내 위험저수지 · 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전문가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저수지 · 댐안전관리위원회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 저수지 · 댐안전관리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충청북도 저수지 · 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안 제3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또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개최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시·도본부장 소속으로 시·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 2.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 5. 「낚시어선업법」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시·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